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66호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는 2011년 개정 이후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어 소관사무의 원칙 및 법령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구분 및 공공시설·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녹지활용계약 대상토지의 면적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 녹화계약 대상지역, 계약 및 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 도시녹화사업 및 녹지의 보호와 육성, 민간녹화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27조)
- 녹지의 실명 관리 및 수목의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 녹지축 설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0조,
제4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1. 4.(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5, 팩스 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붙임자료

- 가.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 다. 비용 추계서 1부.
- 라. 연도별 비용 추계표 1부.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의 환경개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내 녹지축, 공공기관이 조성한 녹지, 일정면적 이상의 녹지(훼손된 녹지와 방치된 토지를 포함한다)와 건축물의 조경시설물 및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하는 조경시설물 등의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녹화를 말한다.
2. “도시녹화계획”이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녹지활용계약”이란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시장이 해당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4. “녹화계약”이란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인 협력에 따라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5. “관리책임자”란 조경시설을 설치한 건축주(조경시설 소유주 포함)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6. “녹지관리청”이란 「산림기본법」 등 관계 법령과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녹지 등을 조성·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단일토지”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단체)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8. “나무은행”이란 주택재건축시행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수목을 굴취, 이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장 도시녹화계획

제4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시장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를 공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시설의 녹화기준 및 유형별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녹화보급활동) 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따른 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기관, 시민,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따라 적절한 역할 분담과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 형성을 구축하여 파트너십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다.

③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 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④ 시민참여에 따른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⑤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팸플릿 등의 제작·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4. 공원·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에 보도

5. 공원·녹지에 관한 문학(시·수필대회, 낭송회 등)행사, 강연회 개최 등

6.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

7. 녹화·조경박람회, 전시회 및 국제포럼 등 개최

8. 녹화 캠페인의 추진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녹지활용계약

제8조(대상토지의 면적 등) ① 녹지활용계약의 대상 토지는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 토지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일 토지 또는 단일 토지가 아닌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도 녹지활용계약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대상 토지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한다.

④ 대상 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녹지활용계약체결) ① 녹지활용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보존을 위하여 직접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토지를 조사하여 그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토지소유자로부터 녹지활용계약의 신청이 있거나 녹지의 확충·보존을 위하여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수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 경우에는 적지로 선정한다.

④ 시장은 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와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협의가 성립되면 시장은 토지 소유자와 별지 제1호 서식의 녹지활

용계약서(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의 설치·정비)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정비한다.

1. 수림이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수림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식재 또는 솎아베기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를 실시한다.
2. 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의자 및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한다.
3. 안내판은 녹지활용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녹지활용 계약의 취지, 관리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한다.
4. 화장실은 가능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해당 토지의 규모가 크고 현지 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친화성·위생성 등을 고려하여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공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변경 계약을 포함한다)이 체결된 후(계약된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에게 개방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1. 녹지활용계약 구역
2. 녹지활용 계약의 목적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관리기간

제13조(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제10조에 따라 체결된 녹지활용 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제14조(계약의 갱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는 녹지활용계약 만료일 14일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위반시의 조치) 녹지활용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적절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적정한 이행 요청을 두 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은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유지관리 등) 시장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관리 한다.

제4장 녹화계약

제17조(대상지역) ① 녹화계약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따라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블록·단지 등)의 토지
2. 도시지역 내 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업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생활주변 지역
3.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따라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4.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지 주변지, 경관·미관지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도시공원이 포함되어 있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제18조(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녹화계약을 체결하려는 일정한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고 한다)는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이행·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

회를 둔다.

②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구성·운영한다.

제19조(계약의 체결 요청)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18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녹화계약서(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녹화계약서(안)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1조(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20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녹화계약을 체결한다.

제22조(계약 체결의 공고) 시장은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3조(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① 제21조에 따라 체결된 녹화계약을 토지소유자 등이 변경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회가 정한 규약에 따라 의사결정 후 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4조(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5조(계약위반시의 조치)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녹화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6조(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수목 및 도시녹화재료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5장 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원 등

제27조(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녹지관리청에 도시녹화사업을 위한 녹지조성 및 보전에 따른 조경시설의 설치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

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 없애기, 공개공지 보존 및 복원, 옥상·벽면녹화 등 생활권 녹지 확충을 위한 시민 녹화 활동
2. 녹지축, 둘레길 및 종주길, 생태습지의 보존 및 복원, 활성화를 위한 운영, 홍보 등
3. 도시녹지 확충을 위한 연구조사 및 시민 홍보 활동
4. 시민의 자연생태체험 및 자연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공원·녹지 자연생태에 관한 각종 국·내외 정보자료 수집 관리, 보급 출판 및 글쓰기대회, 전시회 등
6. 시민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
7. 그 밖에 도시녹화 및 녹지보존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가 옥상녹화·벽면녹화·담장 개방녹화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제21조와 「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8조(녹화지원) ① 녹지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

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꽃 등 조경소재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21조에 따른 녹화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제21조와 「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도로, 벽면녹화, 마을공동 녹화지역
 2.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중점녹화가 필요한 지역
 3. 군수·구청장,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녹화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경관향상 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녹화의 경우
- ② 녹지관리청은 수목 소유자가 수목 등을 기증할 경우 이를 녹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녹화장려) ① 시장은 조경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분야별 우수한 조경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녹화계약 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기술지도, 기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시민참여) ① 녹지관리청은 출생·입학·졸업·창사·결혼·회갑·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녹지관리청은 시민 또는 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공원 또는 도로 등에 초화류·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1조(나무은행) ① 녹지관리청은 각종 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과 시민이 기증하는 수목 중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여 재활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각 녹지관리청에 설치된 나무은행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녹지관리청은 개발사업 승인 시 계획구역 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장 조경시설의 유지·관리

제32조(조경시설의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유지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험예방 목적의 가지치기, 넘어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의 바로 세우기, 물 주기, 비료 주기, 병충해 방제 등의 관리
2. 잔디·초화류·지피식물의 관리
3. 산책로,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
4. 조각, 조형물, 분수 등의 기능유지와 보수·정비
5. 그 밖에 조경시설의 유지·보수

② 관리책임자는 조경시설의 훼손, 수목고사 등의 경우에 즉시 보수(보식)하여야 한다. 단, 수목의 경우 식재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제33조(녹지관리청의 의무) ① 녹지관리청은 제32조에 따라 관리하는 조경시설이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기술지도·묘목의 알선 및 공급 등 녹지의 보전과 녹화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에 필요한 조경관리의 실태조사를 관련 민간단체에 대행시킬 수 있다.

제34조(원상회복) ① 녹지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을 하게 할 수 있다.

1. 건축물 사용승인 시 받은 조경시설물의 원상을 녹지관리청의 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공이 조성한 녹지의 훼손
3. 그 밖에 손상되거나 훼손된 조경시설물

② 녹지관리청은 원상회복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공공이 조성한 녹지를 훼손한 경우는 관련 규정 등 일반 예에 따라 훼손자 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장 녹지의 실명관리 및 수목의 등록관리

제35조(녹지의 실명관리) ① 녹지관리청은 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해

여 개인, 회사, 단체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 가꾸기 위한 녹지관리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려는 자는 미리 녹지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녹지관리청은 위촉장을 수여하여 실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녹지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실명관리지원자에 대한 보상 등) 녹지관리청은 제35조에 따라 녹지관리에 참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을 할 수 있다.

1. 지역 환경개선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명예인증 수여
2. 녹지의 실명관리 우수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3. 중·고등학교의 학생봉사활동 인정

제37조(나무 등의 보호) ①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목·수림의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득이 제거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목·수림의 회복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녹지관리청이 지정한 도로변 건물의 관리책임자는 건물의 옥외 조경시설의 유지관리에 있어 녹지관리청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8조(수목·수림의 등록관리) ① 녹지관리청은 보호수·보호수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목·수림 중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목·수림은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수목·수림을 등록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등록된 수목·수림의 소유자는 도시의 자연자원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등록된 수목·수림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등록된 수목·수림의 소유자는 등록된 수목·수림을 제거, 이식 또는 수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녹지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자연고사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녹지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유지관리의 지원) ① 녹지관리청은 등록된 수목·수림을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그 소유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녹지관리청은 등록된 수목·수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상의 지도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장 녹지축 설정 및 유지·관리

제40조(녹지축 설정 및 반영) ① 시장은 각종 개발로부터 녹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녹지의 보전을 위하여 녹지축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녹지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녹지축:북쪽에서 남쪽으로 가현산, 계양산, 철마산, 소래산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과 인천대공원, 장수천변, 오봉산, 청량산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의 기맥으로 연결된 S자 모양의 녹지
2. 부녹지축:한남정맥을 포함한 S자 녹지축에서 분기된 여타의 기맥

으로 형성된 녹지

3. 광역녹지축:시와 인접한 경기도 김포시, 시흥시와 연결되는 한남정맥(가현산~소래산)과 도시단위를 넘어서 광역적인 생물의 이동을 고려한 녹지

4. 조성형 녹지축:조성된 공원, 시설녹지(완충녹지, 연결녹지), 공공공지, 하천, 녹도 등을 선형으로 연결하여 인위적으로 조성한 녹지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녹지축을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할 때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1조(녹지축의 유지·관리) ① 시장은 녹지축이 훼손되거나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지축을 보전·관리·복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녹화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할 경우에는 녹지축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의 반영

2. 주녹지축과 연계한 부녹지축의 설정에 관한 기준의 제시

3. 광역녹지축의 설정에 관한 기준의 제시

4. 도시재정비를 할 경우에는 조성형 녹지축 확충계획을 우선적용

5. 광로 이상의 도로를 건설할 경우에는 중앙분리대에 가로수 식재와 도로변에 완충녹지의 설치

6. 도심지 녹지관리는 가로수, 쌈지공원 등 소규모 녹지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추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장이 행한
처분 및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 및 기타 행위로 본다.

[별표1]

공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5조 관련)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 기준

가. 녹화목표

- (1) 녹화의 목표는 양적인 목표와 질적인 목표를 구분 설정한다.
특히, 질적 목표는 공공시설의 녹화가 도시녹화, 지역녹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 (2) 현황과 비교될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하도록 한다.
- (3) 녹화계획을 구체적이며 알기 쉽도록 도면이나 스케치를 작성한다.

나. 조성 기준

- (1) 녹화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기법으로서 각 공공시설별로 내용, 사업별, 목표량, 사업주체 및 사업시기 등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2) 특히, 지속성을 필요로 하는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 녹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 군·구 산하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옥상녹화가 가능한 부분은 녹화하여야 한다.

2. 공공시설의 유형별 녹화기준

가. 관공서 녹화

- (1) 대상 시설로는 시, 군·구청사, 주민자치센터,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시민센터, 구민회관, 도서관 및 박물관 등으로 한다.
- (2) 시청, 군·구청 등 큰 규모의 관공서는 가능한 경우 울타리를 없애고 교목과 관목(생울타리, 화단 등)을 식재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 (3) 면사무소, 주민센터(동사무소)와 같은 작은 규모의 관공서는 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작은 분수와 녹음수, 파라솔 등과 같은 시설을 도입한 소규모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지자체 관공서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해소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 (4) 관공서 중 노후 담장을 우선적으로 녹화하고, 가시권이 불량한 지역이나 녹지가 부족한 지역 내 관공서를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 (5) 지역 내 관공서 중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시행하도록 한다.
- (6)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녹화실천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책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관공서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나. 교육 및 의료시설 녹화

- (1) 학교, 병원 및 보건소 등은 각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고 일괄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전반적인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한다.
- (2)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녹지수준이 비교적 낮은 학교, 병원 등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추진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교육 및 의료시설의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 (3) 학교 및 병원시설에 담장녹화, 생울타리 또는 시설녹지 개념의 녹지대 조성, 담장 철거 및 투시형 펜스 설치 등으로 공공시설의 개방감을 연출하고 인접한 보행로와 공간적 연계성을 고려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가시 가능한 도시녹화공간을 확보한다.
- (4) 학교와 병원시설 주변에 가급적 담장설치를 억제하여 공공성과 개방성을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외곽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녹

지대 및 투시형 펜스로 시설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다만, 수목으로 조성할 경우, 교목을 열식하고 하목으로 생울타리를 조성하며, 생태적·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수종을 도입하여 특색 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다. 역사(지하철)주변 녹화

- (1) 역사(지하철)는 출입구 위치와 인접 교차로 현황 등에 따라 다양한 녹화가 가능 하므로 주변 환경의 체계적인 현황분석을 통하여 유형별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 (2) 역사(지하철) 녹화사업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용률이 높은 환승역사(지하철)주변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역사주변에 식재 가능한 소규모 공지는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녹지 휴식공간을 확보한다.
- (3) 역사(지하철) 진·출입 부근은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역사주변 건축물의 이용 동선과 마찰이 없도록 주변 건축물의 용도 및 기능과 연계시켜 녹지로 조성하고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역(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라. 철도변 녹화

- (1) 철도변을 녹화하여 운행 시에 보여지는 주변의 불량한 경관을 차폐하여 여행객들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한다.
- (2) 철도변의 녹화사업은 열차운행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방음·방진·차폐식재 등을 위주로 시행하며, 철도변의 부지는 대부분 협소하므로 차폐식재와 방음식재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 (3) 철도변의 녹화는 차폐식재와 방음식재를 주로 실시하고, 차폐식재는 열차 승차 시에 보여지는 시선방향으로 상록교목을 식재하며, 방음식재는 수목의 폭원이 확보되어야 소음감소 효과가 있으므로 가급적 철도변 가까운 곳에 상록교목을 모아심기 하도록 한다.

마. 주차장 녹화

- (1) 주차장 녹화사업을 통해 녹지면적을 증가시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 (2) 주변의 이질적 경관 및 소음과 같은 환경악화 요소를 시각적으로 차단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
- (3) 공용주차장의 경우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넓은 열린공간을 갖고 있으므로, 가로와 접한 일정 부분을 건축선후퇴를 유도하여 확보되는 가용지를 가로수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 (4) 장기적으로 일반 주차빌딩과 연계된 환승주차장을 확보하여 기존 지상 주차장의 가용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 (5) 주차장내 포장재료는 아스팔트 대신 잔디와 화강석 또는 벽돌을 혼용하는 투수형 잔디 블록과 같은 특수재료를 사용하여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바.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 (1) 도시구조물의 유형별 녹화공법 등 종합적인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물 벽면의 차폐 및 장식, 오염 또는 비바람에 의한 외벽 침식 및 풍화방지, 벽면 온도의 상승 억제에 따른 열부하 감소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한다.
- (2) 육교와 방음벽 같은 도시의 주요 구조물은 가로 구조물 벽면에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 (3) 가로변의 절개지와 옹벽, 석축 및 교량의 교각 등 도시구조물의 벽면에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킨다.
- (4) 특히, 지표와 가까운 구조물은 녹화가 용이하므로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사. 가로변 녹지대 조성

- (1) 가로변의 유희공지나 도시구조물 등을 녹화하여 녹음을 보강하고 바닥포장과 가로시설물이 일체화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가로환경을 조성한다.
- (2) 도로여건상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열 가로수를 식재하고 가로수 아래 아교목, 관목류를 식재한 복층화를 통해 가로공간의 녹시율을 높인다.
- (3) 중앙분리대 등 기존 녹지대를 복층으로 식재하며 가로변 녹지대 및 가로수 아래 보도면 일정구간에 화단을 조성하여 화목류(철쭉류 등) 및 향토수종 등을 집중적으로 식재한다.
- (4) 차량위주로 되어 있는 도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푸름과 그늘이 있어 주민이 걷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보행자 중심의 녹화거리를 조성한다.
- (5) 교차로변의 공지에는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목이나 수경시설을 설치하여 물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푸름과 윤택함이 있는 가로환경으로 조성한다.
- (6) 교차로부근은 일반적으로 보행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시민들이 휴식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필요하므로 수경시설을 설치하여 시각적 볼거리를 제공한다.

아. 비포장확대 및 투수성 포장

- (1)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광장, 주차장, 공원, 휴게공간 등은 투수성 포장공법 등을 적용하여 우수 침투율이 극대화 되도록 한다.
- (2) 우수의 자연지반 침투가 불가능한 인공지반 상부에는 우수저류공법을 적용하여 우수가 단지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 (3) 우수 유출량이 많은 도로 주변에는 우수침투 및 저장공간을 조성한다.

[별표2]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6조 관련)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 기준

가. 녹화의 목표 : 사유지 녹화는 주민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유형별로 목표를 알기 쉽게 설정하도록 한다.

나. 조성 기준 : 유형별로 녹화사업기법을 기술하면서 특히 사업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지도내용 및 조성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의 활용, 공개공지나 유휴공지의 녹화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다. 시민의 참가, 협력 등

(1) 주민, 기업 등 민간의 도시녹화에 대한 참가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을 기술한다.

(2) 지역의 도시녹화기금이나 공원협회, 녹지관리기구 등의 도시녹화 관계단체의 육성, 협력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3) 주민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기술한다.

라. 보급 활동과 표창 등의 시행

(1) 녹화특성과 주민의 활동 상황을 근거로 하여 기념식수, 홍보활동의 강화, 녹화경연대회 개최, 교육활동의 강화, 녹지의 날 및 월간 녹지의 달 제정, 녹화행사의 개최, 시, 군·구의 나무와 꽃의 제정, 주민참가에 의한 녹화운동의 추진 및 녹지의 애착을 높이기 위한 운동의 추진 등 주민의 녹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보급 활동의 방법을 제안한다.

(2) 표창 등 제도의 추진도 다양하게 시도한다.

2. 사유지 유형별 녹화기준

가. 공업지 녹화 : 도시경관 개선의 측면에서 이전이 어려운 공장지를 녹화하고 아울러 공장 주변부에 완충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

환경의 쾌적성을 높이고 오염발생시설 이미지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나. 상업업무지 녹화

- (1)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 및 대형건물은 도시의 중심부에 주로 위치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한다.
- (2) 건축물 옥상녹화 : 녹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부의 건축물 옥상을 녹화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함은 물론 자연과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도시녹지공간을 확충할 수 있다.
- (3) 대형건물 진입부 주변 녹화 : 공공기관과 관공서의 전면부는 기관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곳이고, 상업 및 업무지역의 출입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이와 같은 대형건물의 진입부 및 주변 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도시의 녹화 측면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 (4) 신축건물의 공개공지 확보 및 녹화 : 신축건물의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을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률 등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를 통하여 도심의 오픈스페이스를 다각도로 확보하고 이를 녹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경관의 개선 및 쾌적성 향상을 도모한다.

다. 주택지 녹화

- (1) 도시인구의 증가로 고밀화된 도심지 주거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주거지 녹화사업을 시행한다.
- (2) 사업추진은 주민 스스로가 조성·관리하며, 시장은 수목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주도의 녹화가 되도록 한다.
- (3) 주거지 녹화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생활공간인 주거지역의

쾌적성을 높이고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주민들의 정서를 함양시키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골목가꾸기 : 녹지 확보가 어려운 좁은 골목이나 주택단지의 출입구 및 창문에 화분 등을 내어 놓음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킨다. 시장은 가꾸어진 사례를 포상하는 제도 등을 통해 사업을 장려한다.

(5) 담장 및 벽면녹화 : 주거지역 내의 담장 및 벽면에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 여름철 복사열을 완화시키고, 블록 담장을 투시형으로 교체 가능한 지역은 수목을 식재하여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높인다.

[별표 3]

녹지활용계약 대상토지 선정시 고려할 사항 (제8조제4항 관련)

구 분	토 지 여 건	고려할 사항
우 선 대상지	1. 주로 임상이 양호한 수림지, 초지 및 수변지 등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토지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녹지 활용 계약에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 2. 지목이 임야·잡종지인 토지로서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관지구 및 풍치지구 등의 수림지를 우선으로 하며, 계약 당시 임상이 양호한 수림지가 아니라도 계약 후 식재 등에 의하여 장기간 녹지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 3. 주택지와 수림지가 연결된 임연부의 토지로 원래는 수림지였으나 인근 주민의 무단경작으로 인하여 숲이 훼손된 곳 등 4. 도시공원, 자연환경보전지구 등과 인접한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 5.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 녹지보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 이미 개방되어 보전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많은 주민의 이용이 예상되는 토지 • 근린공원의 공급이 비교적 적은 지역에 인접한 토지 • 경사도가 심하지 않고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 일상 접근이 용이한 토지 • 임상이 양호하나 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전을 필요로 하는 토지 •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환경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토지
차 선 대상지	1.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인 토지. 다만, 공원조성 및 토지매입 등의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수림지, 초지 및 수변지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토지 <단, 해당토지가 보전산지(공익용산지), 보안림, 산지정화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구역 및 연안구역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종교시설지 또는 성지가 수림지, 토지 및 수변지이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훼손의 우려가 있는 토지 등	

녹지활용계약서(안)

토지소유자 ○○○을 “갑”이라 정하고, 인천광역시장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의무) “갑”과 “을”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토지구역의 표시) 계약토지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첨부된 도면과 같다.

토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인천광역시 ○○군·구 ○○면·동 ○○리			

제3조(계약토지의 무상대여 및 사용목적) “갑”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해당 토지”라 한다)를 “을”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을”은 해당 토지를 시민(주민)이 휴식 등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제4조(계약기간) 해당 토지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한다.

제5조(시설의 설치·정비) 해당 토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산책로·벤치·음수대·안내표지판·(필요시 화장실) 등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정비
2.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 유

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3.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 등

제6조(관리) 계약기간 중 녹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 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토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토지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7조(토지사용의 제한) “을”은 제5조에 따른 해당 토지내의 시설의 설치·정비 및 제6조에 따른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 형질변경 이외에 “갑”의 승인 없이는 해당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할 수 없다.

제8조(금지행위)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의 승낙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9조(재산세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해당토지에 대하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납부대상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다.
2. 재산세 비과세와 관련된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0조(해당 토지의 유지관리) “을”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유지 관리한다.

제11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녹화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12조(계약의 갱신) ① “을”은 “갑”과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갑”은 계약만료 14일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만료일까지 “갑”이 “을”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활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3조(계약위반시의 조치) “갑”, “을” 중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대하여 위반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1개월 이내에 본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해당 토지의 반환) “갑”은 계약기간 중에는 “을”에게 토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을”은 본 계약이 만료하여 “갑”이 더 이상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속히 해당 토지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만료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만료 후 해당 토

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존치시키거나, “을”이 계약만료 후 1년 이내에 철거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토지 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

(을)인천광역시장 (인)

녹화계약서(안)

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 대표자를 “갑”이라 정하고 인천광역시장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녹화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이 계약 대상지역에 풍부한 녹지를 조성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갑”과 “을”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동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명칭) 이 계약은 ○○마을(지구) 녹화계약이라고 한다.

제4조(대상지역) 이 계약의 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 ○○군·구 ○○면·동 ○○리 ○○번지의 필지 m^2 로 별지 세부 토지조서 및 도면에 표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녹화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으로 한다.

제6조(녹화에 관한 사항) 제1조에 따른 녹화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녹화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고 있는 토지 등의 녹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정되고 질서 있는 환경이 되도록 도로에 면한 부분은 수목을 열식 또는 생울타리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철망펜스를 병용한다. 다

만, 가옥의 출입구·차고 등 필요한 부분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녹지가 풍부한 주택지가 되도록 향토 수종 등을 식재하고 수목이 잘 성장하도록 가꾼다.

3. 계절감이 넘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도로 인접지는 꽃이 피는 수목을 식재하되, 식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에 접한 부분에 화분으로 초화류나 관목류 등을 놓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4. 블록담을 설치할 경우에는 블록의 안쪽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바깥부분(도로와 접한 부분)에 화단을 설치하여 초화류 등을 식재한다.

제7조(녹화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등은 동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는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등은 식재한 수목이 각 가정의 녹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보전 및 미관풍치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함부로 훼손·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기타 공작물의 설치 시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식재된 수목을 이식하고, 훼손이 된 경우에는 같은 수종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적합한 수종으로 보식한다.

3. 제2호에 따라 보식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4.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구역의 미관풍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로수 등에 대하여도 갈수기에는 가정에서 사용한 잉여수를 이용하여 관수하는 등 관리에 노력한다.

제8조(묘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_____ .

2. _____ .

3. _____ . (이하 생략)

제9조(토지소유자 등 주민협회의회의 운영) 본 계약내용을 원활하게 이행·관리하기 위하여 “갑”은 년 2회 이상의 주민협회의회를 개최한다.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 본 녹화계약의 내용의 변경 및 해지는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 23조를 준용 한다.

제11조(계약의 갱신) ① “갑”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녹화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2조(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 이 계약구역 안에서 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녹화계약의 내용은 그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소유권 등을 양도 등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이 계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위반시의 조치) ①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계약을 위반한 자로 하여금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을”은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계약서의 보관 등) 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갑”은 계약대상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이 계약서 사본을 각 1부씩 제공하여야 한다.

년 월 일

(갑) ○○ 주민협의회 대표자 주소 :

성명 : (인)

(을) 인천광역시장

(인)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11조(도시녹화계획) ○ 제12조(녹지활용계약) ○ 제13조(녹화계약)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도시녹화계획) 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그가 관할하는 도시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녹화에 관한 계획(이하 "도시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시녹화계획에는 「산림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도시지역의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시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16조제4항과 제19조제5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녹지활용계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식생 또는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그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녹지활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녹화계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일정 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묘목의 제공 등 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녹화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수림대(樹林帶) 등의 보호
2. 해당 지역의 면적 대비 식생 비율의 증가
3.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식생의 증대

②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27조(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녹지관리청에 도시녹화사업을 위한 녹지조성 및 보전에 따른 조경시설의 설치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1. 담장 없애기, 공개공지 보존 및 복원, 옥상·벽면녹화 등 생활권 녹지 확충을 위한 시민 녹화 활동
 - 2. 녹지축, 둘레길 및 종주길, 생태습지의 보존 및 복원, 활성화를 위한 운영, 홍보 등
 - 3. 도시녹지 확충을 위한 연구조사 및 시민 홍보 활동
 - 4. 시민의 자연생태체험 및 자연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5. 공원·녹지 자연생태에 관한 각종 국·내외 정보자료 수집관리, 보급 출판 및 글쓰기대회, 전시회 등
 - 6. 시민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
 - 7. 그 밖에 도시녹화 및 녹지보존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시장은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가 옥상녹화·벽면녹화·담장개방녹화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도시녹화사업 자치단체 보조사업 : 4건

- 벽면녹화, 옥상녹화, 푸른 마을쉼터, 도시 숲 조성

2)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지원(비영리 법인 및 단체) : 3건

○ 인천 꽃 전시회, 푸른 인천글쓰기, 둘레길(종주길) 프로그램

3) 민간참여 도시녹화사업 지원 : 1건

○ 시민참여 도시녹화사업

나. 추계 결과

○ 총사업비 : 7,15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건수		8건	8건	8건	8건	8건	8건
사 업 비		7,156	1,217	1,301	1,424	1,546	1,668
재 원 별	국 비	610	90	100	120	140	160
	시 비	4,251	752	799	850	900	950
	군구비	2,075	335	360	410	460	510
	민간부담	220	40	42	44	46	48

다. 재원조달방안

○ 도시숲 조성사업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시민참여도시녹화사업 : 시비 83%, 민간부담 17%

○ 기타사업(6건) :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불 임

4. 작성자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장 배준환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입	도시숲조성	9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610,000
	소계	9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610,000
세출	인천꽃전시장 등 8건	841,500	899,500	970,000	1,040,000	1,110,000	4,861,000
	소계	841,500	899,500	970,000	1,040,000	1,110,000	4,861,000
재원 조달							
국 비		9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610,000
시비	소 계	751,500	799,500	850,000	900,000	950,000	4,251,000
	일반회계	751,500	799,500	850,000	900,000	950,000	4,251,000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구비		335,500	359,500	410,000	460,000	510,000	2,075,000
민 간		40,000	42,000	44,000	46,000	48,000	220,000
기 타		—	—	—	—	—	—